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자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권 강화 및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15호)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4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김도읍의원안

-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2) 발 의 일 : 2024. 7. 5.
- (3) 회 부 일 : 2024. 7. 8.

2. 김남희의원안

-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 (2) 발 의 일 : 2024. 7. 9.
- (3) 회 부 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도읍의원안

(1) 제안이유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안 제8조의3 신설)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판장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등사(안 제8조의4 신설)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안 제8조의5 신설)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2. 김남희의원안

(1)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람·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열람·등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2) 주요내용

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안 제8조의3 신설)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등사(안 제8조의4 신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i)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¹⁾에 대한 특례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함)상 특정강력범죄²⁾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및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고(안 제8조의4, 김도읍의원안 및 김남희의원안), (ii)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
-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2)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0. 4. 15., 2011. 3. 7.,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 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공판기록과 같은 기준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안 제8조의3, 김도읍의원안 및 김남희의원안), (iii)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8조의5, 김도읍의원안).³⁾

현 행	김도읍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신 설>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를 준용한다.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① 재판장은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① 법원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u>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 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 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 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을 가진다.</u> <u>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 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 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 사를 선정하여야 한다.</u>	
--	--	--

한편, 김도읍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9호)가 함께 발의되어 있고,

3) 각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26554호)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임.

김남희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하는 경우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불복절차 도입에 맞추어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48호)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⁴⁾

현행	김도읍의원안(제2201409호)	김남희의원안(제2201548호)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 ----- ----- ----- ----- ----- 법원에 ----- -----.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 ----- -----.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 ----- ----- ----- 결정 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소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소한 소송 기록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

또한, 김도읍의원안의 경우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특례(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6개 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1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3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7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2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18호), 이상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발의되어 있음.

현 행	김도읍의원안(제2201409호)	김남희의원안(제2201548호)
⑤ (생 략)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⑦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개정안에 대한 내용별 검토

가.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안 제8조의4 신설)

현 행	김도읍의원안	김남희의원안
<신 설>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 기록 등 열람·등사) ① 재판장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 기록 등 열람·등사) ① 법원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 등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판기록의 열람 · 등사가 재판장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없고(같은 법 제294조의4제6항),⁵⁾ 이에 대해서 판단의 이유를 명시할 필요도 없어(같은 법 제39조)⁶⁾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 · 등사 불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동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들과 함께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i) 불복 절차 도입에 맞추어 법원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 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이유 통지의 의무화하고(김도읍의원안 제2201409호, 김남희의원안 제2201548호), ii)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 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김남희의원안 제2201548호)하고 있음.

○ 또한, 동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들은 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서 더 나아가, i)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의 피

5)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 등사) ①·② (생략)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생략)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6) 「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해자 등⁷⁾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되, ii) 다만,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 일반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 사유(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⁸⁾에 해당하는 경우(김도읍의원안 및 김남희의원안)* 또는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김도읍의원안)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⁹⁾

* 예외 사유 : △ 안보, 공공질서 등 침해 우려 △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등 침해 우려 △ 증거인멸·도주 등 사법방해 우려 △ 피고인의 개선·갱생 지장 초래 우려 △ 영업비밀 침해 우려

- 7) 개정안 제8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를 “피해자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규정된 범위와 같음.
- 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⑦ (생략)
- 9) 다만, 김도읍의원안에 따르면 본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의 절차에 따르더라도 같이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도읍의원안, 제2201409호)이 불허가 등에 있어서의 이유제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허가 등을 다룰 수는 없는 데 반하여, 김남희의원안에 따르면 같이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남희의원안, 제2201548호)에서 불허가 등에 대한 이유제시뿐만 아니라 불복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불허가 등을 다룰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음.

○ 근자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이 문제되었는데,¹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판기록의 열람·등사가 거절될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6항),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¹¹⁾)을 이용하여 관련 기록을 얻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 경우 민사소송의 피고인 가해자에게 원고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알려져 추후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¹²⁾

- i)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¹³⁾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점,
- ii)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재판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으나 관련 법률인 일본 「범죄피해자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절차에 부수

10)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음”이라고 제안한바 있음(2023.10.).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공판기록의 열람·등사가 거절된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6항),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을 이용하여 관련 기록을 얻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 경우 민사소송의 피고인 가해자에게 원고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알려져 추후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11)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되어 2025. 7. 12.부터 시행 예정이다.

13) **헌법 제27조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점,¹⁴⁾ iii) 현행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에게 재판기록 확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와 같은 간접적·우회적인 수단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점, iv)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의 기본적 윤리와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¹⁵⁾로서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판기록 및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그 취지가 인정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할 경우,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특성상 무의식적인 기억 왜곡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증언의 취사·변형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긴

14) 일본의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설명은, 김광현,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제2107호, 국회입법조사처(2023.6.27.) 참조. 한편, 법률 원문은 <https://www.e-gov.go.jp> 에서 2024.7.11. 최종 검색하였음.

일본 「범죄피해자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犯罪被害者等の権利利益の保護を図るための刑事手続に付随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 제3조 ① 형사피고사건이 계속되는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 당해 피고사건의 종결까지의 사이에 있어, 당해 피고사건의 피해자 등 또는 당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변호사로부터, 당해피고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찰관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열람 또는 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한 자에게 그 열람 또는 등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특정강력범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고, 그 밖에 피해자에 의한 기록 열람·등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¹⁶⁾ 개정안은 i) 피해자에게 무제한적인 열람·등사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인 점, ii)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제59조의2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현저한 또는 중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점, iii)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4항¹⁷⁾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이상 김도읍의원안 및 김남희의원안 공통), iv) 김도읍의원안의 경우 재판장이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측면도 있음.

○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김도읍의원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와 동일하게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김남희의원안은

16)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관련한 우려에 대한 문헌 검토는, 김광현,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제2107호, 국회입법조사처(2023.6.27.)를 참고하였음.

17)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가 있는바, ‘법원’이 결정할 경우 합의부가 이를 논의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재판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에 비하여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법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¹⁸⁾

○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하여 김도읍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안 부칙 제1조), 김남희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안 부칙 제1조)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에 따른 법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이에 따른 재판지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일선에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한,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은 2년¹⁹⁾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25년 7월 12일 시행 예정임.

18) 김도읍의원안 제8조의4제1항 본문 중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중 “법원”은 “재판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통일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9) 이 개정법률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22778)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이 대안과 관련하여 대안반영폐기된 4건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안(제2104829호), 김남국의원안(제2106408호), 서일준의원안(제2106760호), 김영배의원안(제2119812호)]에서는 모두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었음.

나. 피해자의 검사 보관 기록 열람·등사권 법제화(안 제8조의3 신설,
김도읍의원안 및 김남희의원안 내용 동일)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를 준용한다.

○ 개정안 제8조의3은 앞서 살펴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기록 및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에 맞추어,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등의 신청 시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내용으로서, i) 허가 여부는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가 결정하고, ii) 불허거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413조부터 제418조까지²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에도 실무상 피해자 자신이 진술한 진술서 등 피해자 본인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므로, 기본적으로 안 제8조의3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를 법제화하는 것임.

○ 안 제8조의3은, i)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의 대상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²¹⁾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20) 「형사소송법」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등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 열람·등사의 범위를 기존 실무의 본인 관련 서류에서 다른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것으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제1항), ii) 열람·등사의 불허가나 조건부 허가 시 기존 실무에 없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제6항 및 제7항), iii)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 등(안 제8의5 신설, 김도읍의원안)

○ 김도읍의원안 제8조의5는, i)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이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해당 변호사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제1항부터 제4항까지), ii)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원(제5항)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27조)와 그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 한한다.

체계와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²³⁾

현행 성폭력처벌법	김도읍의원안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²²⁾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제8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

문 의 처
02)6788-5056

- 22) 한편, 김도읍의원안과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19호,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은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동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안 제22조)하면서, 피해자 변호사의 열람·등사에 관한 제27조제4항을 삭제하고 있음.
- 23) 참고로, 김도읍의원안과 함께 발의된 6개 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2655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3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7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22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1418호), 이상 김도읍의원 대표 발의]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개 법률안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하여 김도읍의원안 제8조의5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